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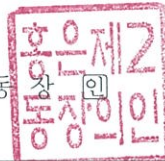
홍은제2동 공고 제2024-21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9일

홍은제2동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명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새***롤	새***롤 (2002-09-03)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*** (홍은동)	성명 정정 (2024.4.29.)